



제2부 위원회 주요 사업

- 제1장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접수 처리
-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제4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 제5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007

제1장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접수 처리

제1절 | 개요

1. 언론중재법상 조정과 중재

언론중재법상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와 언론사 간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을 법률가와 언론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어 양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양자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당사자 간 감정의 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다. 법원 소송과 달리 사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보도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기능을 발휘하며,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언론피해구제에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분쟁해결 방식의 또 다른 축인 ‘중재’는 사건의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판단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하여 신청하는 것으로서,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을 중재부의 결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도에는 새로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한 건의 신청도 없었으나, 2006년도에는 7건, 2007년도에는 14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제도가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6개(서울 6개, 지역 10개) 중재부를 두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중재부장, 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변호사, 언론사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 등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 조정신청 청구현황

1. 연도별 현황

“

조정청구 총 1,043건 접수

”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1,043건의 조정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200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기는 하나, 2년 연속 전체 청구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언론중재법 시행과 더불어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해지고 조정신청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국민 일반의 권리의식 향상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조정심리

【표 1】 최근 5년간 조정신청 현황

[2003. 1. 1. - 2007. 12. 31.]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구건수	724	759	883	1,087	1,043
전년대비 증감	213	35	124	204	△44

2. 청구권별 현황

“

손해배상청구 매년 증가 추세

”

조정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총 청구건수 1,043건 중 정정청구가 절반을 넘는 551건(52.8%), 손해배상청구 349건(33.5%), 반론청구 115건(11.0%), 추후청구가 28건(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손해배상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정이나 반론청구는 위원회에, 손해배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어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컸으나,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언론보도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05. 1. 1. - 2007. 12. 31.]

청구명 \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정정	531 (60.1)	546 (50.2)	551 (52.8)	1,628 (54.0)
반론	194 (22.0)	211 (19.4)	115 (11.0)	520 (17.3)
추후	17 (1.9)	12 (1.1)	28 (2.7)	57 (1.9)
손배*	141 (16.0)	318 (29.3)	349 (33.5)	808 (26.8)
계	883 (100)	1,087 (100)	1,043 (100)	3,013 (100)

* 2005년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 7. 28. 이후의 건수임

* ()안의 숫자는 %

3. 매체유형별 현황

“

방송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증가

”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고(60.8%), 방송(24%), 인터넷신문(10.8%), 뉴스통신(2.9%), 잡지(1.0%), 기타(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 잡지 등 전통적 뉴스매체에 대한 청구는 점차 줄어들고, 파급력이 큰 방송,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등에 대한 청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7월 언론중재법 시행과 함께 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도입되면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초상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초상권, 음성권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방송매체에 대한 청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신문 또한 2005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점차 증가추세이다. 향후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 포털이나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 등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되면 인터넷매체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통신에 대한 청구 역시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뉴스통신이 게재한 기사를 여타 일간지, 인터넷신문 등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통신의 보다 신중한 보도 태도가 요구된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2005. 1. 1. - 2007. 12. 31.]

매체유형 \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신문	일간신문	492 (55.7)	598 (55.0)	504 (48.3)	1,594 (52.9)
	주간신문	117 (13.3)	154 (14.1)	130 (12.5)	401 (13.3)
방송		174 (19.7)	216 (19.9)	250 (24.0)	640 (21.2)
잡지		33 (3.8)	25 (2.3)	10 (1.0)	68 (2.3)
뉴스통신		18 (2.0)	17 (1.6)	30 (2.9)	65 (2.2)
인터넷신문*		48 (5.4)	77 (7.1)	113 (10.8)	238 (7.9)
기타		1 (0.1)		6 (0.5)	7 (0.2)
계		883 (100)	1,087 (100)	1,043 (100)	3,013 (100)

*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졌으므로, 2005년도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는 2005. 7. 28. 이후의 수치임. 2005. 7. 28. 이후 전체 건수와 비교하면 인터넷신문 비율은 10.1%임

* []안의 숫자는 %

4. 침해유형별 현황

“

초상권·음성권 침해에 대한 청구 증가

”

조정신청 사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청구가 953건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했고, 초상권 53건(5.1%), 음성권 12건(1.1%), 프라이버시권 11건(1.0%), 기타 9건(0.9%), 성명권 3건(0.3%), 신용훼손 2건(0.2%) 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져 위원회는 언론 분쟁의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피해구제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청구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2005. 1. 1. - 2007. 12. 31.)

침해유형 \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명예훼손	827 (93.7)	1,003 (92.3)	953 (91.4)	2,784 (92.4)
신용훼손	23 (2.6)	17 (1.6)	2 (0.2)	42 (1.4)
초상권	15 (1.7)	48 (4.4)	53 (5.1)	116 (3.8)
음성권	2 (0.2)	7 (0.6)	12 (1.1)	21 (0.7)
성명권	14 (1.6)	1 (0.1)	3 (0.3)	18 (0.6)
프라이버시권		5 (0.5)	11 (1.0)	15 (0.5)
기타	2 (0.2)	6 (0.5)	9 (0.9)	17 (0.6)
계	883 (100)	1,087 (100)	1,043 (100)	3,013 (100)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

신청인 중 개인이 50.3%, 국가기관은 대폭 줄어

”

2007년 전체 조정신청 사건 중 개인에 의한 청구가 525건으로 가장 많은 50.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일반단체(13.9%), 기업체(13.7%), 국가기관(9.7%), 지자체(3.6%), 언론사(3.2%), 공공단체(2.3%), 교육기관(2.3%), 종교단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에 의한 신청은 2005년 43.6%에서 2006년 48.7%, 2007년 50.3%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점차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절차의 간편화로 인해 일반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또한 기업체나 국가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개인이 위원회 절차를 통한 신속·간편한 피해구제를 선호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반면 국가기관의 신청은 2006년의 13.9%에서 2007년 현재 9.7%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05. 1. 1. - 2007. 12. 31.)

신청인 \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개인	385 (43.6)	529 (48.7)	525 (50.3)	1,439 (47.8)
국가기관	146 (16.5)	151 (13.9)	101 (9.7)	398 (13.2)
지자체	31 (3.5)	31 (2.9)	38 (3.6)	100 (3.3)
공공단체	22 (2.5)	15 (1.4)	24 (2.3)	61 (2.0)
일반단체	152 (17.2)	172 (15.8)	145 (13.9)	469 (15.6)
종교단체	19 (2.2)	9 (0.8)	10 (1.0)	38 (1.3)
기업체	106 (12.0)	128 (11.7)	143 (13.7)	377 (12.5)
언론사	10 (1.1)	17 (1.6)	33 (3.2)	60 (2.0)
교육기관	12 (1.4)	35 (3.2)	24 (2.3)	71 (2.3)
계	883 (100)	1,087 (100)	1,043 (100)	3,013 (100)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현황

중재부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61.8%로 2005년의 65.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중재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중재부 다음에는 경기중재부(8.1%), 전북중재부(6.2%), 광주중재부(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05. 1. 1. - 2007. 12. 31.)

중재부	연도	2005	2006	2007	합계
서울중재부		592 (67.0)	709 (65.2)	644 (61.8)	1,945 (64.5)
부산중재부		35 (4.0)	42 (3.9)	25 (2.4)	102 (3.4)
대구중재부		14 (1.6)	31 (2.8)	32 (3.1)	77 (2.6)
광주중재부		44 (5.0)	55 (5.1)	63 (6.1)	162 (5.4)
대전중재부		19 (2.1)	29 (2.7)	41 (3.9)	89 (3.0)
경기중재부		87 (9.9)	113 (10.4)	84 (8.1)	284 (9.4)
강원중재부		15 (1.7)	14 (1.3)	14 (1.3)	43 (1.4)
충북중재부		10 (1.1)	13 (1.2)	23 (2.2)	46 (1.5)
전북중재부		29 (3.3)	50 (4.6)	65 (6.2)	144 (4.8)
경남중재부		25 (2.8)	20 (1.8)	37 (3.5)	82 (2.7)
제주중재부		13 (1.5)	11 (1.0)	15 (1.4)	39 (1.3)
계		883 (100)	1,087 (100)	1,043 (100)	3,013 (100)

* []안의 숫자는 %

7. 접수 유형별 현황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인터넷이나 구술에 의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정 및 중재신청을 간편화했다. 이에 따라 방문 접수는 2006년 53.4%에서 2007년 43.5%로 줄고, 인터넷 접수는 2006년 22.9%에서 2007년 29.8%로 증가하는 등 접수 유형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접수 보다 편리하고, 접수한 이후에도 위원회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의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05. 7. 28. - 2007. 12. 31.)

연도 \ 구분	방문	우편	인터넷	구술	청구건수
2005	295 (62.1)	74 (15.5)	74 (15.5)	33 (6.9)	476 (100)
2006	580 (53.4)	245 (22.5)	249 (22.9)	13 (1.2)	1,087 (100)
2007	454 (43.5)	251 (24.1)	311 (29.8)	27 (2.6)	1,043 (100)

* 인터넷 및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가능해짐

* ()안의 숫자는 %

제3절 | 조정신청 처리결과

1. 조정신청 처리결과의 개요

2007년도 청구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43건 중 합의 359건(34.4%), 취하 388건(37.2%), 조정불성립결정 194건(18.6%), 직권조정결정 54건(5.2%), 기각 42건(4.0%), 각하 6건(0.6%)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처리결과와 비교하면 합의율이 1.6% 상승한 반면, 취하율은 0.8% 낮아졌다. 기각된 42건은 신청인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각하 6건은 신청기간을 넘기거나 신청인 자격에 흠결이 있는 것이었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당사자 간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2005. 1. 1. - 2007.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5	883 (100)	334 (37.8)	31 (3.5)	20 (2.3)	181 (20.5)	19 (2.2)	15 (1.7)	283 (32.0)
2006	1,087 (100)	357 (32.8)	29 (2.7)	28 (2.6)	225 (20.7)	22 (2.0)	13 (1.2)	413 (38.0)
2007	1,043 (100)	359 (34.4)	22 (2.1)	32 (3.1)	194 (18.6)	42 (4.0)	6 (0.6)	388 (37.2)

* []안의 숫자는 %

조정사건의 처리결과 중 직권조정결정은 1996년 7월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성립될 수 밖에 없어 조정의 실효성이 적었다. 따라서, 중재부가 사건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었다.

1996년 도입 이후 직권조정결정의 연도별 처리결과는 (표 9)와 같다. 시행 첫 해인 1996년에는 직권조정결정이 9건에 불과했고,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수용보다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신청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직권조정결정 건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건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02년 직권조정결정 건수가 30건을 넘어선 이래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각각 51건, 57건, 54건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는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이 언론분쟁의 실효성 있는 해결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직권조정결정 연도별 처리결과

(1996. 1. 1. - 2007.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244	11	18(2)	102(16)	24	5	237(92)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2003	724	287	15	15(1)	101(10)	27	3	276(158)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148)
2005	883	334	31	20(4)	181(11)	19	15	283(160)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250)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257)
계	8,562 100%	2,988 34.9%	214 2.5%	212(27) 2.5%	1,549(134) 18.1%	209 2.4%	52 0.6%	3,338(1,806) 39.0%

* ()안의 숫자는 합의 또는 조정결정 중 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직권조정결정제도는 1996. 7. 1.부로 시행

2. 피해구제율 현황

“

피해구제율 64.8%, 2006년에 비해 크게 증가

”

피해구제율은 전체 피해구제 건수를 조정건수(기각, 각하를 제외한 건수)로 나눈 수치이다. 피해구제 건수에는 합의된 경우, 직권조정결정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취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반론보도가 되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포함된다.

2007년의 경우 1,043건의 조정청구 중 645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해 피해구제율 60.6%보다 크게 상승한 64.8%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하였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피해구제율(59.3%)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60%대의 피해구제율을 기록하고 있어 양당사자에 효율적이고 만족스런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0] 피해구제율 현황

(1981. 3. 31. - 2007.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1981-2004		8,351	239	8,112	4,813	59.3
2005		883	34	849	530	62.4
2006		1,087	35	1,052	637	60.6
2007		1,043	48	995	645	64.8
계		11,364	356	11,008	6,625	60.2

* 피해구제율은 (합의건수+동의된 조정결정건수+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를 조정건수(기각, 각하를 제외한 건수)로 나눈 수치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007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각각 551건과 115건으로 청구건수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40.5%, 45.2%) 등 기타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에 비하여 합의율(22.1%)은 낮은 반면 취하율(47.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하율이 높은 것은, 병합 청구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등으로 합의 되는 경우 이에 만족하고 금전배상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합의율은 2006년 15.4%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취하율 및 불성립율은 각각 3.2%, 6.0%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청구권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551 (100)	223 (40.5)	29 (5.3)	103 (18.7)	22 (4.0)	3 (0.5)	171 (31.0)
반론	115 (100)	52 (45.2)	3 (2.6)	22 (19.1)	4 (3.5)	1 (0.9)	33 (28.7)
추후	28 (100)	7 (25.0)		2 (7.1)	2 (7.1)		17 (60.8)
손배	349 (100)	77 (22.1)	22 (6.3)	67 (19.2)	14 (4.0)	2 (0.6)	167 (47.8)
계	1,043 (100)	359 (34.4)	54 (5.2)	194 (18.6)	42 (4.0)	6 (0.6)	388 (37.2)

*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

“

B신문사는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A신청인의 잠행에 관해 보도하면서, 특급호텔에 투숙하고 개인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회의를 위해 지인의 객실을 잠시 빌렸을 뿐이고, 개인소유의 자동차가 없다며 특급호텔 투숙객 확인서와 자동차의 등록증을 제출하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B신문사는 신청인이 특급호텔에 투숙한 적이 없으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

[사례 2]

일방의 입장만 보도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한 사례

“

한 병원에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부작용으로 평생 하이힐을 신어야만 걸을 수 있으며,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A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의 보도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병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은 부작용이 회복 기간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심리 중 A방송사는 신청인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반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해서 반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 시청자들이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으면 모두 부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론을 권유하였다. 심리 결과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권고를 수용하고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

[사례 3]

범죄보도에 대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A씨가 30대 여성을 살해, 방화한 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여대생 기숙사에서 강도짓을 벌였다는 B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A씨는 살인, 방화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범죄인인 양 단정적으로 보도한 B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로 볼 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며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권고, 피신청인이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

합의율은 방송이 가장 낮고, 잡지가 가장 높아

”

매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매체성격에 따라 합의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를 상대로 조정신청한 사건의 경우 40.0%의 가장 높은 합의율을 기록하였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합의율이 38.9%인 반면 방송의 합의율은 매체 중 가장 낮은 28.4%에 머물렀다.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의 합의율은 각각 35.8%, 36.9%로 전체 평균 합의율 34.4%와 비슷하였으며, 뉴스통신에 대한 조정신청사건 중 합의된 비율은 33.4%였다.

[표 12]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문	일간신문	504 (100)	178 (35.8)	16 (3.2)	85 (16.9)	22 (4.4)		203 (40.2)
	주간신문	130 (100)	48 (36.9)	11 (8.4)	27 (20.6)	3 (2.3)		41 (31.5)
	방송	250 (100)	71 (28.4)	24 (9.6)	52 (20.8)	11 (4.4)	1 (0.4)	91 (36.4)
	잡지	10 (100)	4 (40.0)	2 (20.0)	2 (20.0)			2 (20.0)
	뉴스통신	30 (100)	10 (33.4)	1 (3.3)	6 (20.0)	1 (3.3)		12 (40.0)
	인터넷신문	113 (100)	44 (38.9)		22 (19.5)	5 (4.4)	5 (4.4)	37 (32.8)
	기타	6 (100)	4 (66.7)					2 (33.3)
	계	1,043 (100)	359 (34.4)	54 (5.2)	194 (18.6)	42 (4.0)	6 (0.6)	388 (37.2)

* ()안의 숫자는 %

[사례 4]

인터넷신문의 오보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례

“ A인터넷신문은 한 종교계의 총무원장인 신청인이 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도 없이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식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중,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법원에 손해배상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므로 정정보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나, 담당 중재부가 소송과 별도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자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였다.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로 조정청구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91.4%가 명예훼손으로 분류되어 다른 인격권 침해 사건과의 처리결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으나, 특징적인 사항을 찾아보면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합의율이 명예훼손의 경우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사건은 보도의 진실 여부를 다루기보다는 ‘사전 동의’, ‘식별 가능’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중재부가 언론사를 설득, 합의를 도출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 1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953(100)	331(34.7)	47(5.0)	185(19.4)	38(4.0)	4(0.4)	348(36.5)
신용훼손	2(100)			2(100)			
초상권	53(100)	21(39.6)	5(9.4)	2(3.8)			25(47.2)
음성권	12(100)	1(8.3)	2(16.7)	3(25.0)			6(50.0)
성명권	3(100)						3(100)
프라이버시권	11(100)	4(36.4)		1(9.1)		1(9.1)	5(45.4)
기타	9(100)	2(22.2)		1(11.1)	4(44.5)	1(11.1)	1(11.1)
계	1,043 [100]	359 [34.4]	54 [5.2]	194 [18.6]	42 [4.0]	6 [0.6]	388 [37.2]

* []안의 숫자는 %

[사례 5]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A일간신문과 B뉴스통신은 신청인이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을 게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결혼정보회사로부터 해당 행사에 언론사 기자들이 초청되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모습이 촬영·게재되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각각의 언론사를 상대로 23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두 언론사 모두 신청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게재한 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과 중재신청에 합의하였고, 중재부는 언론사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중재결정을 내렸다.

”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종교단체가 청구한 사건의 합의율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언론사가 청구한 사건의 합의율이 51.5%로 높았다. 그리고 국가기관, 교육기관, 공공단체 순이었다. 합의율이 가장 낮은 신청인 유형은 지자체로 29.0%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합의율이 향상(2006년 32.8%→2007년 34.4%)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종교단체와 언론사 청구 사건의 경우 2006년도에는 합의율이 각각 11.1%, 29.4%에 불과하여 9개 신청인 유형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했으나, 2007년도에는 각각 60%, 51.5%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언론사 간 분쟁’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신청인인 사건은 2006년 17건에서 2007년 33건으로 건수도 2배 가량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청인이 종교단체나 언론사인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부가 PR보도, 해명기사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잘 유도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국가기관의 청구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기업체의 청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의 경우 합의율도 전년도 대비 10%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23.4%→33.5%). 정부와 기업이 언론의 주요 취재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기업체 신청 사건 증가에 대비해 위원회가 회계나 주식 등 비즈니스 관련 전문 영역의 내용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신청인 유형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525 (100)	165 (31.4)	34 (6.5)	90 (17.2)	27 (5.1)	3 (0.6)	206 (39.2)
국가기관	101 (100)	44 (43.5)	3 (3.0)	15 (14.9)	3 (3.0)		36 (35.6)
지자체	38 (100)	11 (29.0)	1 (2.6)	14 (36.8)			12 (31.6)
공공단체	24 (100)	10 (41.7)		6 (25.0)			8 (33.3)
일반단체	145 (100)	48 (33.1)	4 (2.8)	31 (21.4)	7 (4.8)	3 (2.1)	52 (35.8)
종교단체	10 (100)	6 (60.0)					4 (40.0)
기업체	143 (100)	48 (33.5)	10 (7.0)	33 (23.1)	2 (1.4)		50 (35.0)
언론사	33 (100)	17 (51.5)		5 (15.1)	2 (6.1)		9 (27.3)
교육기관	24 (100)	10 (41.7)	2 (8.3)		1 (4.2)		11 (45.8)
계	1,043 (100)	359 (34.4)	54 (5.2)	194 (18.6)	42 (4.0)	6 (0.6)	388 (37.2)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각 중재부별 처리결과에서 합의율을 보면, 서울의 6개 중재부가 34.8%로 총 청구건수 대비 합의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각 지역 중재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권조정결정은 서울중재부가 48건(644건 중 7.5%)으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지역중재부의 경우 총 399건 가운데 6건(1.5%)에 머물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편, 신청인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음으로 해서 기각결정한 비율이 지역은 2.3%인데 반해 서울은 전체의 5.1%로 2배 이상 높았다.

취하비율은 지역이 43.1%로, 서울 32.9%에 비해 10% 가량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중재부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서울	644 [100]	224 [34.8]	48 [7.5]	121 [18.8]	33 [5.1]	6 [0.9]	212 [32.9]
부산	25 [100]	10 [40.0]	1 [4.0]	1 [4.0]	2 [8.0]		11 [44.0]
대구	32 [100]	13 [40.6]		7 [21.9]	2 [6.3]		10 [31.2]
광주	63 [100]	21 [33.3]	4 [6.3]	11 [17.5]			27 [42.9]
대전	41 [100]	16 [39.0]		9 [22.0]			16 [39.0]
경기	84 [100]	20 [23.8]	1 [1.2]	24 [28.6]	4 [4.8]		35 [41.6]
강원	14 [100]	8 [57.1]		2 [14.3]			4 [28.6]
충북	23 [100]	11 [47.8]		1 [4.4]			11 [47.8]
전북	65 [100]	19 [29.2]		5 [7.7]			41 [63.1]
경남	37 [100]	13 [35.1]		11 [29.7]	1 [2.7]		12 [32.5]
제주	15 [100]	4 [26.7]		2 [13.3]			9 [60.0]
계	1,043 [100]	359 [34.4]	54 [5.2]	194 [18.6]	42 [4.0]	6 [0.6]	388 [37.2]

* ()안의 숫자는 %

제4절 | 중재신청 처리결과

언론중재법은 정기간행물법상 운용됐던 조정절차 외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에 합의하여 신청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 중재신청이 한 건도 없었지만, 2006년에는 7건, 2007년에는 14건이 접수되어 위원회에서 중재로 처리된 사건은 총 21건이다. 전체 조정건수에 비하면 적지만 중재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인다.

중재제도에 대한 위원회의 홍보가 부족한 측면과 아울러 중재부의 결정에 조건 없이 따라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언론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아직까지는 중재청구건수가 적다.

현재까지의 중재청구사건을 분석해보면, 신청인은 일반 개인이고 명예 외에 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음성 등 기타 인격권 침해가 주된 청구원인이며, 주로 소액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유형은 양 당사자 모두 복잡한 법원 소송보다 위원회에서 신속 간편하게 종결하고자 한 사안들이었다. 2007년에 이루어진 14건의 중재청구는 손해배상청구가 12건, 정정보도청구가 2건이었으며, 침해유형별로 보면 초상권 침해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이나 소송에 비해 중재신청의 장점은 신청인에게는 위원회의 법률 지식 및 경험을 이용할 수 있고, 법원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시간적 손실 없이 조속히 분쟁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언론사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보도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현직 법관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중재부가 유사 사례의 법원판결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모두 중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만족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위원회가 신청인 및 언론사 종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이해를 잘 구한다면 인격권 보호를 위한 종국적 언론분쟁해결제도로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6] 중재신청 현황

[2007. 1. 1. ~ 2007. 12. 31.]

침해유형	구분	청구건수	청구현황	
			정정보도	손해배상
초상권		12	2	10
프라이버시권		2		2
계		14	2	12

[사례 6]

중재를 신청한 사례

“ A케이블 방송사는 한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일반인 출연자로 나온 신청인의 성인영화배우 경력이 밝혀져 상대방 남성출연자에 의해 탈락하게 되는 과정을 여과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사생활이 폭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 A케이블 방송사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로 노출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는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고, 중재부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제5절 | 손해배상 청구 현황

1. 현황

“

전체 청구건수 중 손해배상청구 비중 지속적 증가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위원회에서 정정보도등 청구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사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 원년인 2005년 141건(29.6%)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318건(29.3%), 2007년에는 349건(33.5%)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어, 위원회 전체 청구건수에서 손해배상청구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손해배상 조정청구 건수

[2005. 7. 28. - 2007. 12. 31.]

연도 \ 구분	조정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비율(%)
2005	476	141	29.6
2006	1,087	318	29.3
2007	1,043	349	33.5

* 2005년 건수는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 7. 28. 이후의 건수임

이는 위원회가 새롭게 도입된 손해배상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이유도 있겠지만, 기존의 정정보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 뿐 아니라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위원회를 통해 언론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점이 주요인이라고 판단된다.

2007년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취하가 167건(47.8%)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 77건(22.1%), 조정불성립결정 67건(19.2%), 직권조정결정 22건(6.3%), 기각 14건(4.0%), 각하 2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취하율이 정정보도 등 여타 청구사건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취하 167건 가운데 122건(73.0%)이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아닌 정정보도 등의 보도문 게재를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졌을 만큼, 다양한 분쟁해결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조

정절차의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51.9%, 2006년 55.9%를 기록한 데 이어 2007년에는 6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여부가 명확하고 후속보도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초상권 침해 등의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금전지급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피해구제율 상승이 곧 금전지급 건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신청인은 단순히 금전을 취하려는 의도보다는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조정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보도문 게재나 진심어린 유감표명, 또는 금전지급을 갈음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피해구제율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18] 손해배상 조정청구 처리결과

[2005. 7. 28. - 2007.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합의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5	141 (100)	16 (11.4)	4 (2.8)	3 (2.1)	41 (29.1)	3 (2.1)	7 (5.0)	67{48} (47.5)	51.9
2006	318 (100)	49 (15.4)	10 (3.1)	10 (3.1)	80 (25.2)	6 (1.9)	1 (0.3)	162{115} (51.0)	55.9
2007	349 (100)	77 (22.1)	8 (2.3)	14{1} (4.0)	67 (19.2)	14 (4.0)	2 (0.6)	167{124} (47.8)	63.1

* { }안의 숫자는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율은 (합의건수+동의된 조정결정건수+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를 조정건수(기각, 각하를 제외한 건수)로 나눈 수치

2. 청구액 및 조정액

“

최고 청구액 1천억원, 최저 청구액 1원

”

2007년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운데 최고 청구액은 1천억원, 최저 청구액은 1원이었으며, 전체 청구액 평균은 396,795,377원이었다. 청구액 평균은 전년도에 비해 3억원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손해배상청구사건 1건의 청구액이 1천억원이었던 까닭에 전체적인 평균이 상승

한 것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다면 청구액 평균(110,579,272원)은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2007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최저 청구액과 최고 청구액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작년 8월, 한 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으며 현직 판사를 상대로 '10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듯이, 한 신청인은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상징적으로 '1원'을 청구했는가 하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다른 신청인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사상 최고 청구액인 '1천억원'을 청구했다.

[표 19]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05. 7. 28. - 2007. 12. 31. 단위: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2005	500,000	4,150,000,000	278,180,778
2006	10,000	3,000,000,000	109,545,629
2007	1	100,000,000,000	396,795,377

“

최고 조정액 1천만원, 최저 조정액 49만원

”

청구액과는 별도로, 조정심리를 통해 실제로 금전지급이 이뤄진 조정액의 2007년 현황을 살펴보면, 최저 조정액이 49만원, 최고 조정액이 1천만원으로 평균 조정액은 3백1십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신설된 이래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조정액이 3백만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액 손해배상사건의 피해구제율이 높고,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가 법원 소송절차보다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간적인 화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정하는 위자료 액수에 비해 조정액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액을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표 20]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05. 7. 28. - 2007. 12. 31,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2005	1,000,000	10,000,000	3,452,381
2006	300,000	15,000,000	3,229,750
2007	490,000	10,000,000	3,133,462

[사례 7]

최저 조정액으로 합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 최근 개선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제도에 관한 A케이블방송의 보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회사 소속 직원인 신청인은 인터넷해지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동의없이 방영되어 초상권이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담당 중재부는 A케이블방송사가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초상을 공개한 점이 인정되지만, 조정대상보도의 전체적인 취지가 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라며 소액의 손해배상액을 권고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49만원으로 합의하였다. ”

[사례 8]

최고 조정액으로 합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 A일간신문은 '국제커플'의 신종속도를 알아본다면서 신청인이 대학교 재학 당시 교제하던 외국인 남자친구와의 커플 사진 및 연애 스토리를 소개, '피부색이 달라도 좋으면 그만'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과 실명, 학교명 등을 공개하여 초상권, 성명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전(前) 남자친구로부터 동의를 구했을 뿐 신청인으로부터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07년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전체 349건 가운데 27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초상권 침해'가 47건, '음성권 침해'와 '프라이버

시(사생활)권 침해'가 각 10건, '성명권 침해'가 3건, '신용훼손'과 '기타'가 각 1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모도 등 어느 청구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청구사건 역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초상이나 음성 등이 공개되거나, 사적 영역의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총 70건으로 집계되어 정보모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에 비해 비교적 침해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초상권 침해' 사건은 47건 중 21건(44.7%)이 합의됐는데, 이는 초상이나 음성 등의 공개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여부 및 승낙 범위에 따라 초상권의 침해여부가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합의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청구건수 276건 중 136건(49.3%)이 취하되어 다른 침해 유형에 비해 높은 취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상당수가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청구와 병합으로 청구되고 있어, 보도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만족하고 별도의 금전 지급없이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276 (100)	50 (18.1)	16 (5.8)	59 (21.4)	14 (5.1)	1 (0.3)	136 (49.3)
신용훼손	1 (100)			1 (100)			
초상권	47 (100)	21 (44.7)	4 (8.5)	2 (4.3)			20 (42.5)
음성권	10 (100)	1 (10.0)	2 (20.0)	3 (30.0)			4 (40.0)
성명권	3 (100)						3 (100)
프라이버시권	10 (100)	4 (40.0)		1 (10.0)		1 (10.0)	4 (40.0)
기타	2 (100)	1 (50.0)		1 (50.0)			
계	349 (100)	77 (22.1)	22 (6.3)	67 (19.2)	14 (4.0)	2 (0.6)	167 (47.8)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349건 가운데 ‘개인’이 232건 (66.4%)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체’ 45건(12.8%), 조합 및 협회 등 ‘일반단체’ 39건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인’은 66%에서 66.4%로, ‘기업체’는 12.9%에서 12.8%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일반단체’는 14.2%에서 11.1%로 다소 감소했다.

신청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현행 언론중재법상 국가기관은 공법인인 ‘대한민국’의 이름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건이 접수되었으나, 자진 취하하였다.

[표 22]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232 (100)	58 (25.0)	19 (8.2)	44 (19.0)	12 (5.2)	1 (0.4)	98 (42.2)
국가기관	1 (100)						1 (100)
지자체	4 (100)	1 (25.0)		1 (25.0)			2 (50.0)
공공단체	7 (100)	1 (14.2)		3 (42.9)			3 (42.9)
일반단체	39 (100)	6 (15.4)		7 (17.9)		1 (2.6)	25 (64.1)
종교단체	5 (100)	2 (40.0)					3 (60.0)
기업체	45 (100)	7 (15.6)	2 (4.4)	11 (24.5)	1 (2.2)		24 (53.3)
언론사	12 (100)	2 (16.7)		1 (8.3)	1 (8.3)		8 (66.7)
교육기관	4 (100)		1 (25.0)				3 (75.0)
계	349 (100)	77 (22.1)	22 (6.3)	67 (19.2)	14 (4.0)	2 (0.6)	167 (47.8)

* []안의 숫자는 %

제6절 | 인터넷신문 청구 현황

1.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은 2005. 7. 28.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가능해졌으며, 시행 첫 해에는 48건이 접수되었고, 2006년도는 77건, 2007년도는 113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신청건수 대비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내외에 머물러(p31, [표 3] 참조) 당초 언론중재법 시행 당시 예상보다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 이는 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털이나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3] 연도별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2005. 7. 28. - 2007.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5	48 (100)	15 (31.2)	2 (4.2)	13 (27.0)		6 (12.5)	12 (25.0)
2006	77 (100)	34 (44.1)	2 (2.6)	13 (16.9)	5 (6.5)		23 (29.9)
2007	113 (100)	44 (38.9)		22 (19.5)	5 (4.4)	5 (4.4)	37 (32.7)
계	238 (100)	93 (39.0)	4 (1.6)	48 (20.1)	10 (4.2)	11 (4.6)	72 (30.2)

* ()안의 숫자는 %

인터넷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의 피해구제율은 2005년도 59.5%, 2006년도 72.2%, 2007년도 65.0%로 전체 평균치 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인터넷신문이 다른 오프라인 매체에 비해 지면이나 시간이 여유가 있고, 문제가 된 기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리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가 쉽게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2005년도 17건에서 2006년도 21건으로, 2007년도는 40건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취하가 많은 이유는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으로 합의되거나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청인이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24] 인터넷신문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2005. 7. 28. - 2007. 12. 31.]

구분 연도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5	정정	29	13		1	6		5	4(3)	66.7
	반론	2	2							100
	추후									
	손배	17			1	7		1	8(7)	43.8
	계	48	15		22	13		6	12(10)	59.5
2006	정정	43	21			7	3		12(9)	75.0
	반론	13	10						3(1)	84.6
	추후									
	손배	21	3		2	6	2		8(8)	57.9
	계	77	34		2	13	5		23(18)	72.2
2007	정정	62	28			11	4	2	17(10)	67.9
	반론	8	4			1		1	2	57.1
	추후	3	2						1(1)	100
	손배	40	10			10	1	2	17(12)	59.5
	계	113	44			22	5	5	37(23)	65.0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난 건수임

* 피해구제율은 (합의건수+동의된 조정결정건수+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수)를 조정건수(기각, 각하를 제외한 건수)로 나눈 수치임

2. 인터넷신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에 관한 정의는 신문법 제2조의5 및 신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적용받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게재” 할 것을 인터넷신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때문에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이나 포털사이트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빠져 있다. 독자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포털사이트는 오프라인 매체나 독립형 인터넷신문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2006년 12월부터 ‘아웃링크(포털에서 검색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시스템)’를 실시하면서 네이버에 기사를 제공하는 종속형, 독립형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인터넷언론사의 페이지뷰가 이전보다 월등히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다. 이처럼 포털사이트와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서 오프라인 매체보다 훨씬 막강한 파급력을 갖는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체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신청인이 보도문을 합의하면서 지면에 게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제공된 기사가 무한 재생되는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각종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피해구제 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전체 인터넷신문 관련 상담 중 포털·언론사닷컴이 35%를 차지

”

2007년 위원회에 접수된 인터넷신문 관련 상담 중 약 35%가 포털이나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에 해당할 정도로 많았지만, 현행법상 인터넷신문이 아니므로 조정·중재신청을 통한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5] 인터넷신문 관련 상담건수 및 상담처리결과

[2004. 4. 1. - 2007. 12. 31.]

연도	구분 인터넷 유형	상담 건수	상담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 종결	기 타	총 계
2004	독립형	77	12	51	2	5	8	2	80
	종속형	18	6	12		1			19
	포털	8	1	7		1			9
	합계	103	19	70	2	7	8	2	108
2005	독립형	133	95	38		8	2	4	147
	종속형	54	35	24		4	2	4	69
	포털	28	13	15		2		5	35
	합계	215	143	77		14	4	13	251
2006	독립형	173	146	23	2	10	2	6	189
	종속형	69	48	14	4	10	1	3	80
	포털	36	18	8	1	9	1	4	41
	합계	278	212	45	7	29	4	13	310
2007	독립형	216	187	20	4	7		10	228
	종속형	65	44	15	3	13		7	82
	포털	38	21	8	1	8	1	5	44
	합계	319	252	43	8	28	1	22	354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과 포털 등은 현재 조정대상 매체가 아님

* 상담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

포털 및 언론사닷컴 보도 관련 피해구제방안 마련 시급

”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포털사이트와 증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 등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포털 등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한 기사삭제청구권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개발하고 새로운 조정·중재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7절 | 운용 평가 및 전망

2007년도는 2005년 7월 28일부로 시행된 언론중재법이 제대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년 연속 3백여 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포함하여 1천여 건이 넘는 조정 청구를 접수하고, 정정보도청구 등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연 평균 60%대의 피해구제율을 유지함으로써 위원회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도입된 손해배상청구도 도입 초기 일부 언론의 우려를 불식하고 위원회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언론피해자와 언론사 모두에게 윈-윈의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에는 위원회 조정절차로 피해구제가 불가능했던 초상권이나 음성권,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한 언론분쟁에 대해서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피해구제제도를 운용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포털 및 증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닷컴)의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관련 법률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보도 보다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크기가 훨씬 적다거나 원보도의 지면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지면, 다른 프로그램에 정정·반론보도가 되는 경우 피해구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조정·중재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증거조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2007년의 경우 증거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p106, [표 44]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증거조사 현황 참조),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위해 증거조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제1절 | 개요

“

현재, 시정권고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

”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정권고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제반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그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사회·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향후 유사보도를 자제토록 권고하는 조치로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는 등 인격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 시행과 맞물려 시정권고 제도에 대해 일부 언론사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언론사로서는 권고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권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정권고조항 자체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결정(2005헌마555, 2006. 6. 29.)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시정권고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

자체심의 200건, 신청심의 2건 등 총 202건 시정권고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일간지 104종 등 총 710종의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200건의 법익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고, 시정권고 신청된 39건의 보도 가운데 2건에 대해 법익침해를 인정하여 시정권고 결정을 내려 총 20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침해유형으로는 자체심의의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공개가 80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관련 상세묘사는 44건(22%)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시정권고 신청은 39건으로 전년도 50건에 비해 11건이 감소하였고, 전년도에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취하율이 대폭 감소(2006년도: 72%, 2007년도: 30.8%)한 대신 기각율이 큰 폭으로 증가(2006년도: 22%, 2007년도: 46.2%)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체심의 현황

가. 침해 유형별 분석

“

침해유형 중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사례가 가장 많아

”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공개 80건(40%), 자살 관련 상세 묘사 44건(22%),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30건(15%),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21건(10.5%), 사생활 침해 14건(7%),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 8건(4%), 정신질환자 신원 공개 2건(1%),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1건(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최근 5년간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통계

연도	침해 유형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정신질 환자 신원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상세 묘사	기타	
2003	237 (100)	13 (5.5)	1 (0.3)	41 (17.3)	153 (64.6)	2 (0.8)	20 (8.4)		7 (3.0)	
2004	283 (100)	7 (2.5)	1 (0.4)	114 (40.3)	68 (24.0)	2 (0.7)	52 (18.4)	21 (7.4)	18 (6.4)	
2005	275 (100)	11 (4.0)		88 (32.0)	24 (8.7)	8 (2.9)	47 (17.1)	85 (30.9)	12 (4.4)	
2006	188 (100)	4 (2.1)	2 (1.1)	69 (36.7)	22 (11.7)	2 (1.1)	10 (5.3)	73 (38.8)	6 (3.2)	
2007	200 (100)	1 (0.5)	2 (1.0)	80 (40.0)	21 (10.5)	14 (7.0)	30 (15.0)	44 (22.0)	8 (4.0)	

* ()안의 숫자는 %

(1)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95나24946, 서울고법 1996. 2. 27.)”고 판시하고 있다.

이후 피의자·피고인의 신원공개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2007년 11월에 ‘범죄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언론인권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혐의자·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신원공개 및 특별히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성명, 초상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되는 등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시정권고소위원회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신원 보호를 심의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해왔다.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법익침해 수치를 보이고 있는 조항으로, 올해도 시정권고 총 200건 중 40%(80건)나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례 9]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한 사례

“

서산경찰서는 2일 자신이 근무했던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모씨(22)를 구속하고 공범 ○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5년 ○월부터 ○○읍 ○○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이들은 지난 5월 29일 낮 12시경 자신들이 근무했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모씨(39)의 지갑에서 현금 10여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낸 혐의다.

”

*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2) 자살 관련 보도

자살보도에 관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는 자살(미수)자 및 그 가족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자살동기 등을 단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한국기자협회가 공동 개최한 <자살예방과 미디어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확립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04년부터 적용해 온 것이다.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07년 전체 시정권고 건수 중 22%에 해당하는 44건을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살미수자,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살 예방법이 제정되면 더욱더 견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10]

자살자의 신원을 보도한 사례

“

30일 오전 4시께 담양군 ○○면 ○○리 마을 자신의 소 축사 앞에서 농부 ○모씨(59·여)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씨의 아들(29)이 발견했다. ...중략... 한편 광주북부경찰은 ○씨가 최근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감안, ○씨가 처지를 비관해 음독 자살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중이다.

”

*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3) 마약류 관련 보도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는 마약 또는 습관성 의약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방법 내지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의 용량·용법 등을 공개한 사례는 2007년도 전체 건수의 약 15%에 달하는 20건을 차지해 2006년도(10건)보다 늘어났다.

마약류의 용량 및 용법, 가격 등을 함께 적시하는 기존 언론보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의 경우, 케타민, GHB, 아바 등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의 명칭과 함께 구입 경로, 환각적 효능 등이 자세히 묘사된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11]

마약의 복용방법 등을 보도한 사례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물뽕(GHB·물 같은 히로뽕)’을 직접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제조책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략… 또 이들이 보관 중이던 물뽕 3.7ℓ (1633명 투약분·시가 6500만원)를 범죄증거물로 압수했다. …중략… 판매 단가는 1회 투약량인 0~0cc당 0만원 정도다. 매수자 석모씨(37) 등 4명은 주거지나 사무실 안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 물뽕을 술이나 음료수에 희석해 마시게 되면 여성을 쉽게 성관계로 유도할 수 있다는 판매광고를 보고 성관계시 사용할 목적으로 e-메일로 주문, 택배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술뽕으로도 불리는 물뽕은 2001년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한 무색 무취의 약물로, 000에 몇 방울 타서 마실 경우 효과가 0시간 지속되며 …중략…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돼 ‘데이트 강간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리며 정제형, 분말형태의 일반마약류와 달리 무색투명한 형태로 남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마약류로 식별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0’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4) 범죄 피해자 등 신원공표

최근 법무부는 2005년 12월에 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에서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진술 등을 대중매체가 다룰 경우, 각별히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1996년부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에 대한 조항을 적용해왔다.

2007년도에 특정강력범죄의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표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한 것은 전체 200건 중 21건으로 10.5%를 차지했다.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표 조항 위반 건은 2003년 이후 매년 확연히 감소하고 있으나 범인의 보복 행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기사 작성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례 12]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례

“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신안군 ○○면 ○○리 ○모(○·55)씨의 집에서 ○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이모(여·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씨가 ‘강도야’라고 소리친 뒤, 전화로 도와 달라고 해 가보니 방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씨의 시신 옆에는 피 묻은 흉기가 놓여 있었고, 이불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30분께 화순군 ○○면 ○○리 벽돌공장 내 방에 사는 ○모(8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6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씨는 양손과 발이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복 상의가 목에 감겨 있었다. 경찰은 ○씨의 방 안을 뒤진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을 훔치러 온 강도가 저항하는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본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2006년 10월 신설)에서는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7년도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공표 위반사례는 단 1건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관련보도로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평균 건수가 8.8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사례 1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사례

“ 김옥경(55세, 빛의 사람들 대표, 성남시 수진동 거주)씨는 2004년 6월 18일 새벽 12시30분경 직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외딴 고갯길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 폭행을 당하는 한 여성(○○○, 26세)을 목격했다. ○○○씨는 자영업을 마치고 ○○동 고개 위 골목길을 접어들어 집에 다다르자 갑자기 나타난 치한(박○훈, 43세)이 ○○○씨의 입을 막고 가로등이 없는 어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쓰러뜨린 후 성폭행을 시도하자, ○○○씨는 이를 뿌리치고 고개 위 골목길 입구로 도망쳐와 쓰러지면서 112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치한이 오히려 큰 소리로 내 여자니깐 간섭하지 말라 함에 따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 '○'으로 처리한 부분은 원보도내용에는 적시되어 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표기하지 않음

(5) 기타 법익 침해

이 외에 2007년도에는 개인적 법익 침해 중 사생활 침해 관련 건수가 14건으로 전년에 비해 많았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보도관행에 따라 내연관계를 공개한 사례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누드 사진을 게재한 사례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대부분이었다.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의 경우는 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나친 선정적 묘사, 독자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충격적인 사진보도 등에 대한 것이었다.

나. 매체 유형별 분석

“ 전체 200건 중 지역일간지가 105건으로 가장 많아 ”

2007년도 자체심의를 위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전체 200건 중 일간지가 126건으로 63%에 달했고, 인터넷신문이 43건(21.5%), 뉴스통신이 20건(10%), 주간지가 11건(5.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중에서도 지역일간지가 126건 중 105건으로 집계되어 여전히 지역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매체수가 증가하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2007년도 법익침해 사례에 대

해 시정권고한 건수는 43건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표 27] 최근 5년간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통계

연도	구분 총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간지	주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2003	237 (100)	219 (92.4)	2 (0.8)	16 (6.8)		
2004	283 (100)	247 (87.3)	15 (5.3)	21 (7.4)		
2005	275 (100)	245 (89.0)	9 (3.3)	19 (6.9)	2 (0.7)	
2006	188 (100)	150 (79.8)	8 (4.2)	14 (7.4)	16 (8.5)	
2007	200 (100)	126 (63.0)	11 (5.5)	20 (10.0)	43 (21.5)	

* ()안의 숫자는 %

(1)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감소 추세

그 동안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와 아울러 언론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신문사들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일간지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권고한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219건에 이르던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은 2007년 들어 126건으로 대 폭 줄었다. 그러나, 2007년의 경우 뉴스통신사의 법익침해 보도내용을 그대로 보도해 시정권 고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신문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증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언론중재법상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신문 중 사건·사고 등 사회·문 화기사를 다루는 등 법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심의하고 있다(2007년 말 기준 인터넷신문 심의매체 320종). 인터넷신문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권고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심의대상매체의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신생 인터넷신문들의 경우 언론보도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향후 포털사이트와 신문사 소유의 종속형 인터넷매체들이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에 포 함되면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 신청심의 현황

가. 시정권고 신청 사건 분석

“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106건의 신청심의 중
7건에 대해서만 시정권고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시정권고 신청은 법 시행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총 106건이 접수되어 7건(6.6%)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취하 52건(49.1%), 기각 38건(35.8%), 각하 및 기타 9건(8.5%) 등으로 처리되었다.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시민단체 등에 의한 무분별한 시정권고 신청으로 인해 자유로운 언론·정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사실상 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정권고 의결 단계까지 위원회가 제정·공표한 ‘시정권고심의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바,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신청심의 의결현황

[2005. 7. 28. - 2007. 12. 31.]

연도	구분 계	신청유형				처리결과				
		개인적 법익 관련	사회적 법익 관련	국가적 법익 관련	기타	시정 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2005	17	15	1		1	3	9		4	1
2006	50	33	17			2	11	1	36	
2007	39	27	12			2	18		12	7
계	106 (100)	75 (70.8)	30 (28.3)		1 (0.9)	7 (6.6)	38 (35.8)	1 (0.9)	52 (49.1)	8 (7.6)

* []안의 숫자는 %

2007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신청은 총 39건이 접수되어 2006년도 50건에 비해 11건 감소하였다. 매체별 접수현황은 전체 39건 중 일간지 22건(56.5%), 주간지 1건(2.5%), 월간지 1건(2.5%), 뉴스통신 5건(12.8%), 방송 10건(25.7%)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38건(97.4%), 단체가 1건(2.6%)으로 개인에 의한 신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 이유를 침해법익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개인적 법익 관련 27건(69.2%), 사회적 법익 관련 12건(30.8%)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내용들 중 특정 주식의 주가보도와 관련한 동일내용 신청 13건을 제외하면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신청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적 법익과 관련해서는 방송언어의 잘못된 사용 등에 관한 시정권고 신청이 다수를 차지했다.

나. 시정권고 신청 처리결과

시정권고 신청은 2007년도에 총 39건이 접수되어 시정권고 2건(5.1%), 취하 12건(30.8%), 기각 18건(46.2%), 타기관 이첩 7건(17.9%) 등으로 처리되었다. 특히 시정권고 신청에 대한 기각 비율이 전년도에는 22%였음에 비해 2007년도에는 46.2%로 높아졌다.

무분별한 시정권고 신청 등 시정권고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정권고 신청 제도를 보다 자세히 소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신청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기사삭제,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하는 등 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기각·취하 건수가 높게 나왔다.

2007년도 시정권고 신청 중 시정권고로 이어진 2건을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특수일간지와 성인 남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잡지가 각 1건으로, 전자는 보도에 게재된 사진이 어린이 및 청소년 정서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어 시정권고를 내렸고, 후자는 독자의 성경험담을 실은 내용이 건전한 성문화에 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표 29] 2007년도 시정권고 신청 심의의결 현황

구분 간별	계	신청유형				처리결과				
		개인적 법익 관련	사회적 법익 관련	국가적 법익 관련	기타	시정 권고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이첩)
일간지	22	18	4			1	16		5	
주간지	1	1							1	
뉴스통신	5	5					1		4	
인터넷신문										
방송	10	3	7				1		2	7
월간지	1		1			1				
계	39 (100)	27 (69.2)	12 (30.8)			2 (5.1)	18 (46.2)		12 (30.8)	7 (17.9)

* ()안의 숫자는 %

제3절 | 운용평가

올해 시정권고 의결 건수는 총 202건(자체심의 200건, 신청심의 2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의결 건수인 247건에 비해 적은 수치이나, 2006년도의 190건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심의대상 매체가 683개에서 710개로 증가한 데도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군 할머니 성폭행 사건 등 인격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피의자·피고인의 신원이 공표된 경우가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특정강력사건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시정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2003년의 166건(70.1%)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07년 22건(11%)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자살관련 상세묘사의 경우 2007년도에는 44건으로 2006년도 73건에 비해 무려 39.7%포인트(29건)나 감소하게 됨으로써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언론보도 양상에 따라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언론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권고 신청 제도는 2005년 7월 이후 2년 5개월 간 운용되면서 언론보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언론 보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제1절 | 개요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 및 선심위 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150일간 설치·운영되며,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심위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한다.

선심위는 해당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수준에 따라 사과문·정정보도문·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하고 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정당 포함)나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다.

2. 선심위 운영방침

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공정 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2007년 8월 21일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 150일 동안 선심위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번 선심위는 역대 선심위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하여 그 운영방침을 정하고, 심의기준 등을 정비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다.

각 결정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선심위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과문 게재’ 결정은 선거법상 선심위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과문 게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미 위헌판결(1991. 4. 1. 89헌마160)을 내린 바 있어 그 행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둘째,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나 진술을 참고하여 명백한 오류로 판명된 기사에 대해서만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

셋째,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 정정보도와 달리 신청인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타 심의·의결 절차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결정유형이다. 그러나, 후보자 등은 언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만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이에 선심위는 정정보도나 사과문 등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건 심의에서도 기사의 사실관계는 어긋나지 않았으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넷째, ‘경고문 게재’ 결정은 ‘주의’나 ‘경고’ 등의 비공개 결정보다 수위를 높은 제재조치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거나 특정 후보를 홍보 또는 폄훼할 의도가 농후하여 그 불공정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섯째, ‘경고’와 ‘주의’ 결정은 특정후보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칼럼이나 저술광고 등을 게재한 경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결과를 공표하였거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경우 등과 같은 보도에 대해 경중을 가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섯째, ‘권고’ 결정은 비록 기사로 인해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나 기사작성에 있어 특정후보를 부각 또는 폄훼하려는 의도가 거의 없어 보이는 경우라든지 보도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위반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3. 심의·의결 절차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 전문 모니터요원 및 실무팀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건에 대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결정사항을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시정요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불공정한 선거관련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심위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하여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선심위로부터 통보받은 '결정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는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론보도문에 대한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정당 포함)나 언론사가 선심위에 이를 회부할 수 있고, 선심위는 회부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심의업무 처리 현황

“

제17대 대선 선심위, 총 37건 보도에 대해 제재조치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2000년 2월에 최초로 활동을 시작한 선심위는 제16대 총선(2000년 4월), 제3회 지방선거(2002년 6월), 제16대 대선(2002년 12월), 제17대 총선(2004년 3월), 그리고 제4회 지방선거(2006년 5월)를 거쳐 제17대 대선(2007년 12월)까지 약 8년간 모두 여섯 차례의 선거기간을 맞아 활발히 활동하였다.

제17대 대선 관련 선심위 활동기간 동안 총 71건에 대해 심의하여 37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제재조치로 이어진 37건은 자체심의 35건과 시정요구심의 2건으로 지난 다섯 차례 선심위 활동기간의 평균 처리건수(65건)보다 43.1%(28건)가 감소했다.

가. 자체심의

선심위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7,900여종의 정기간행물 가운데, 구독이 가능하고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할 가능성이 높은 일간지 104종, 종합주간지 22종, 지역주간지 263종, 월간지 7종 등 총 396개 매체를 자체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30] 제17대 대선 선심위 자체심의 대상매체 현황

구분	계	일간지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월간지
		중앙일간지	지역일간지			
매체수	396	27	77	22	263	7

각 매체에 게재된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하여 총 35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2건, 경고 13건, 주의 19건 그리고 권고 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하였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28건(80%)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보도요건’이 4건(11.4%), ‘광고제한’이 3건(8.6%)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19건(5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합주간지 8건(22.9%), 중앙일간지 4건(11.4%), 지역주간지와 월간지 각 2건(각 5.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타 매체에 비해 지역일간지의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1] 제17대 대선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분 간별	구분 계	위반유형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 금지	광고 제한	칼럼 게재 제한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중앙 일간지	4	1			3		3	1		
지역 일간지	19	15	4			1	6	11	1	
종합 주간지	8	8					3	5		
지역 주간지	2	2					1	1		
월간지	2	2				1		1		
계	35 (100)	28 (80.0)	4 (11.4)		3 (8.6)	2 (5.7)	13 (37.1)	19 (54.3)	1 (2.9)	

* ()안의 숫자는 %

나. 시정요구

2007년도에는 총 2건의 시정요구가 선심위에 접수되어 모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두 건의 시정요구인들은 모두 정정보도를 구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반론보도 게재에 만족의사를 밝혀온 점 등을 참작하여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매체는 각각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였고, 두 매체 모두 반론보도문 게재를 이행하였다.

[표 32] 제17대 대선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구분 간별	계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정정 보도등	사과문 게재	주의· 경고· 권고등	기타 공정 보도 등	정정 보도 게재 결정	반론 보도 게재 결정	경고	주의	취하	기각
중앙 일간지	1	1					1				
종합 주간지	1	1					1				
계	2 (100)	2 (100)					2 (100)				

* ()안의 숫자는 %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제17대 대선 선심위 활동기간 동안 반론보도청구가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 회부는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한 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선심위에 이를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 급박하게 진행되는 선거구도 속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결정유형별 분석

가. 반론보도문 게재

선심위는 총 2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의결하였다. 모두 시정요구심의에서 이루어졌으며, 각각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신청한 사건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중앙선관위 주최 합동토론회 외에는 어떤 합동 TV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을 구하는 이 후보의 시정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선심위는 기사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하였다.

또한, '2002년 대선 때 삼성으로부터 받았던 대선잔금을 이회창 후보가 계속 관리했고,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두 차례 대선과 연관되어 재산이 급증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과 사과문을 구하는 시정요구를 접수한 선심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존중해 '사과문 게재' 결정에 대한 행사를 자제하기로 한 운영방침에 따라 정정보도요구에 대해서만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심의결과 시정요구인과 피시정요구인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양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가 없어 정정보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보도내용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보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양 당사자들이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나. 경고문 게재

이번 선심위에서 내린 '경고문 게재' 결정은 총 2건으로 지역일간지와 월간지가 각 1건이었고, 위반유형은 2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이었다. 선심위는 의도성과 함께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언론사에 대해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다. 경고

자체심의를 통해 선심위가 제재결정한 총 35건의 기사 가운데 37.1%인 13건이 '경고' 결정이었다.

매체별 현황을 보면 지역일간지가 6건,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가 각 3건, 그리고 지역주간지가 1건이었다.

'경고' 결정을 받은 기사의 세부적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10건(76.9%)으로 가장 많고, '광고제한'이 2건(15.4%), 그리고 '여론조사 보도요건'이 1건(7.7%)이었다.

라. 주의

자체심의를 통해 의결한 총 35건 중 54.3%에 해당하는 19건이 '주의' 결정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선심위에서 이루어진 제재조치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보면 지역일간지가 11건, 종합주간지가 5건,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지역주간지,

월간지가 각 1건이었다. 19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이 15건(78.9%), ‘여론조사 보도요건’이 3건(15.8%), 그리고 ‘광고제한’이 1건(5.3%)으로 나타났다.

마. 권고

이번 선심위에서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은 1건이었다. 자체심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매체는 지역일간지였다.

바. 기각

‘기각’ 결정은 시정요구심의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유형으로 이번 선심위에서는 단 한 건의 ‘기각’ 결정도 없었다.

3. 위반유형별 분석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심위가 자체심의를 통해 제재결정을 내린 대상 기사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집중 보도하거나 판세분석, 인터뷰, 의정활동 보고, 사진, 그리고 제목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부각시키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 것들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보도요건을 미비한 채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한 것 등의 여론조사 관련 기사, 선거일 전 18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특정후보자 지지·추천·반대의 의견광고와 선거일 전 9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후보자의 칼럼 등도 심의대상으로 삼았다.

선심위가 자체심의한 기사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반기사 총 35건 가운데 특정후보 인물부각 등 공정성 및 형평성 관련 기사가 28건(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론조사 관련이 4건(11.4%), 광고제한이 3건(8.6%)으로 나타났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기사 28건을 보도유형별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15건(53.6%), 특정 인물·정당 비난이 5건(17.9%), 판세분석이 3건(10.7%), 인터뷰가 2건(7.1%), 의정활동보고와 사진, 그리고 제목이 각 1건(각 3.6%)으로 집계되었다.

(1) 인물 부각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을 이유로 선심위에서 제재결정을 받은 보도유형 중 53.6%(15건)를 차지한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후보예정자 내지 후보자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특정인물을 부각시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정도가 심한 언론사의 경우 특정인물에 대한 자세한 약력과 인생관 등에 대해 같은 날짜 2~3개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하거나 며칠 동안 연속하여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인물부각 관련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41.2%(7건)가 풍수지리나 예언서 등에 근거한 역술인 등의 주장에 편승하여 특정인물을 부각 보도함으로써 제재를 받았다.

(2) 특정인물 비난

특정후보자나 특정정당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제재를 받은 기사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의 17.9%(5건)이다. 선심위는 특정후보 등을 집중적으로 비난·비판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타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하려한 것은 특정인물을 부각하여 보도한 기사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하였다. 이번 선심위가 심의·의결한 건수(35건) 중 14.3%(5건)가 특정인물 비난 등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세활동을 전개하였던 선거풍토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3) 판세분석

선거관련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다른 유형의 기사들보다 그 중요성에서 비중이 높다. 정당과 후보들에 대한 판세분석기사가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을 위해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정당 자체 분석, 정밀취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의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할 때는 보도의 공정성에 큰 상처를 입는다.

판세분석 기사 가운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기사들은 모두 3건(10.7%)으로 주의 2건과 경고 1건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재를 받은 매체는 모두 지역일간지였으며, 한 매체가 두 번 중복해서 제재(주의 1건, 경고 1건)를 받았다.

(4) 인터뷰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중 인터뷰 관련기사는 7.1%(2건)를 차지했다. 여러 후보자들에 대해 릴레이나 시리즈 형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한 언론사도 다수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특정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 단발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종합주간지에 대해 2건 모두 '주의' 결정을 내렸다.

(5) 의정활동 보고

이번 선심위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중 의정활동 보고로 지적된 것은 1건(3.6%)이었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지기간에 특정인의 국회의정활동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특정후보와 특정정당의 대선전략을 부각 보도한 지역일간지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6) 사진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전체기사 가운데 사진보도가 불공정 사례로 제재를 받은 것은 1건(3.6%)으로, 선심위는 특정 후보의 거리유세 현장을 기사화하면서 선거 공식포스터 및 유세현장 사진 등을 부각 보도한 지역일간지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7) 제목

선심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 중 제목이 문제가 된 기사 1건(3.6%)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제재를 받은 매체는 종합주간지로, 특정 대선후보들의 家門에 대해 보도하면서 내용과는 상반된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했다고 선심위는 판단했다.

제목은 기사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기사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대충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때로는 기사 내용보다 과장 내지는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선거기사에서의 제목은 민감한 것일 수 밖에 없고, 그 파급효과 또한 엄청난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제목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는 7건, 2004년 17대 총선 때는 5건,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는 2건, 그리고 이번 제17대 대선 때는 1건으로 나타나 제목 관련 위반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여론조사

선거기사의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는 4건으로 모두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미비한 것이었고, 여론조사결과 보도금지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매체는 없었다. 이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보도 금지기간이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공표 가능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있지만, 여론조사 보도금지기간에 대한 언론사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함께 적시해야 할 요건으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하는 것을 심의기준으로 정했지만, 매체별 특성이나 기사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당한 언론사는 지역일간지 4개 매체였고, 1개 매체에 대해 '경고', 3개 매체에 대해 각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다. 광고제한

선심위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선거기사 심의기준 제16조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여 의견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기사는 총 3건이었으며 '경고' 2건과 '주의' 1건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제재 매체는 2개 매체로 모두 중앙일간지였으며, 1개 매체가 두 번 중복해서 제재('주의' 1건, '경고' 1건)를 받았다.

제3절 | 운용 평가 및 개선방안

2000년 2월 8일 국회는 그 해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정기간행물 등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개정하여 선심위를 설치토록 하였다. 당시 대다수 언론사들은 선심위 관련 조항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약 8년이 지난 지금에는 선거 출마당사자는 물론이고 언론사마저도 선심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선심위의 기능을 이해하는 국민 대다수는 그 역

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근래의 선거는 금품수수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선거운동에 악용될 여지가 있는 각종 집회나 후보자의 호별방문을 엄격히 금지하는 대신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한 ‘돈 안드는 선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도 언론에 의한 선거였음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 또한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만큼 선거에서 절대적 지위에 있는 언론인만큼 그 보도는 더욱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며,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 대한 평가

“

선심위 제재에 대한 언론사 재심청구 한 건도 없어

”

이번 선심위는 자체심의 35건과 시정요구심의 2건 등 총 37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론사의 재심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각 언론사들이 선심위 결정을 신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심위의 자체심의를 위원회 시정권고 심의업무와 실무적으로 유사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선심위의 시정요구심이나 반론보도청구 회부 심의는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와 매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비슷하게 진행되어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실무적 역량이 잘 축적되어 있는 만큼 선심위는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하였다.

이번 선심위는 사실·칼럼 등 의견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심의업무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재의 수위와 방향 등에 있어서 가급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2. 선거보도심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선거보도심의 관련 법률 개정 시급

”

현행 선심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150일 동안 운영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한데 통상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 1년여 앞둔 시점에서도 여론조사결과 및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다룬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선거일수록 선거 관련 보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또한 선거법상 배제되어 있는 대통령선거 외의 재·보궐 선거가 연중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선거보도 관련 심의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선심위 결정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과문 게재명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정정보도 게재 결정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만 내릴 수 있는 결정이라 짧은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가리기가 어려워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심의안건에 대한 선심위의 결정은 주의나 경고가 주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심위는 주의·경고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공정성이 심한 언론사나 동일유형의 위반 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 사과문의 전(前)단계 형식인 ‘경고문 게재’ 결정을 하고 있으나, 결정유형의 정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선심위가 접수·처리하는 시정요구 심의와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제도 운영기간의 불일치다. 시정요구 심의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청구유형별 신청인 자격을 달리하고 있다. 시정요구 심의는 후보자(후보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해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후보자(또는 후보예정자) 및 정당(중앙당)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청구건 접수 후 처리기간에 대한 제한이 서로 다르다. 시정요구 심의는 접수된 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청구절차가 상이하다. 시정요구 심의에 대한 청구절차는 임의적임에 반해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는 반드시 언론사와 협의하여 불성립된 경우 선심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제도에 적용되는 상이한 기준에 대해 그 유의미성을 찾기가 어려우면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관성 있는 법적용을 위해서도 상이한 적용기준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표 33]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회부 차이점

구분	시정요구	반론보도청구	관련 근거
적용기간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선거법 제8조의3제6항 - 선거법 제8조의4제1항
신청인 자격	후보자 (후보예정자)	- 후보자(후보예정자) - 정당(중앙당)	- 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선거법 제8조의3제6항 - 선거법 제8조의4제1항
처리기간	접수 후 지체 없이	접수일로부터 48시간 이내	- 선심위규칙 제15조제2항 - 선거법 제8조의4제3항
전치절차	임의적 절차	필요적 절차 (회부 전 언론사와의 협의 필요)	- 선심위규칙 제15조 제2항 - 선거법 제8조의4제3항

불공정보도에 대한 선심위 결정 대부분은 그 불공정보도로 인한 손해를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보도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보도에 대한 교정보도가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불공정보도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심위는 그 결정에 피해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거보도심의회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기회균등이라는 평등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이 함께 부양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제1절 | 상담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1. 개요

“

2007년 한 해 동안 총 2,343건의 상담 처리

”

2007년 7월 1일 사무처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 상담부서였던 법무상담팀이 상담교육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회 상담부서에는 2명의 상근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기자, 언론 종사자 모두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 소관업무라 할 수 있는 조정 및 중재신청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 민사집행 절차, 형사절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민·형사상의 구제절차가 망라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롭게 리뉴얼한 상담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상담환경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민원인 상담공간을

확충하고 민원인 대기실 환경을 개선하여 상담인들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총 2,343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전년도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결과다(2006년 2,304건). 이로써 지난 2004년 4월 1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가 설치된 이래 200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누적 상담건수는 8,816건에 달하며, 매달 평균 196건의 상담을 꾸준히 처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별 상담실적 분석

가. 상담신청 유형

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상담방(일명 채팅방), 인터넷게시판, 이메일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총 상담건수 2,343건 중 전화 상담이 1,916건(8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상담 190건(8.1%), 인터넷 실시간 상담 113건(4.8%), 인터넷 게시판 상담 91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상담신청 유형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기타
2,343 (100)	1,916 (81.8)	190 (8.1)	113 (4.8)	91 (3.9)	14 (0.6)	19 (0.8)

* []안의 숫자는 %

나. 상담 처리결과

“

상담 10건 중 4건은 조정·중재신청으로 이어져

”

상담 처리결과는 조정절차 안내 1,776건(68.0%), 법적절차 안내 291건(11.1%), 타기

관 안내 221건(8.5%), 기타 안내 218건(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상담의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조정청구 접수비율을 살펴보면, 조정절차 안내건수 1,776건 가운데 696건이 접수되어 그 비율이 39.2%로 확인되었다. 결국,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조정신청으로 이어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 원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언론피해상담

상담 처리결과 중 조정절차 안내와 법적절차 안내 건수의 변화가 눈에 띈다. 조정절차 안내의 경우 점차 증가추세(2004년 55.6%, 2005년 63.2%, 2006년 67.6%, 2007년 68%)이고, 법적절차 안내는 감소추세(2004년 25.7%, 2005년 21%, 2006년 11.3%, 2007년 11.1%)이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을 위원회 조정 및 중재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표 35] 상담 처리결과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상담건수	상담 처리결과							조정청구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종결	기타	계	
2,343	1,776 (68.0)	291 (11.1)	81 (3.1)	221 (8.5)	23 (0.9)	218 (8.4)	2,610 (100)	696 (39.2)

* []안의 숫자는%

* 상담처리결과는 복수의 처리결과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함

* 조정청구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건수 대비 조정청구 접수건수의 비율을 의미함

* 자체종결은 피해가 전혀 없거나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다. 상담신청 피해유형

상담신청의 피해유형을 살펴본 결과, 명예훼손 1,459건(60.9%), 기타 582건(24.3%),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247건(10.3%), 사생활 침해 63건(2.6%), 신용훼손 43건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명예훼손의 비율이 다른 피해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명예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들로 인식되고 있는 초상, 음성, 성명, 사생활 등 다른 피해유형들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24.3%를 보이고 있는 기타 피해유형 중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사실은 A회사에 대한 내용인데 기사에는 B회사로 나와 B회사의 주가가 급락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주식투자자들의 피해호소도 많았으며,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공표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부진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상담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가 주로 문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재산상의 손해가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표 36] 상담신청 피해유형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상담건수	상담신청 피해유형					계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기타	
2,343	1,459 (60.9)	43 (1.8)	247 (10.3)	63 (2.6)	582 (24.3)	2,394 (100)

* ()안의 숫자는 %

* 피해유형은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함

라. 상담신청 매체유형

“

방송에 대한 상담신청이 일간신문을 앞질러

”

매체유형은 방송이 709건(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간신문 699건(29.2%), 인터넷매체 325건(13.6%), 주간신문 215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4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설립 이후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방송매체는 평균 25.6%, 일간신문은 평균 31.8%로 방송매체가 일간신문 보다 평균 6% 정도 적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방송매체(29.6%)가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일간신문(29.2%)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향후 오래도록 지속될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인쇄매체에 비해 방송매체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각 방송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호소는 매우 빈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매체는 공중파 3사(KBS, MBC, SBS) 및 케이블 방송사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공중파 3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내지는 피해호소가 반복된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및 형식상 관련 업체나 당사자의 피해호소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몇몇 케이블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7] 상담신청 피해유형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상담건수	상담신청 피해유형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월간지	통신	인터넷	기타	불명	계
2,343	699 (29.2)	215 (9.0)	709 (29.6)	31 (1.3)	63 (2.6)	325 (13.6)	24 (1.0)	330 (13.8)	2,396 (100)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함

마. 상담신청 신청인유형

위원회 상담창구를 가장 많이 이용한 신청인 그룹은 '개인'으로 1,368건(58.4%)을 차지했다. 이어 회사 260건(11.1%), 일반단체 178건(7.6%), 공공단체 72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격권 침해가 주를 이루는 언론사건의 특성상 상담 신청인이 익명으로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불명이 433건(18.5%)에 달하고 있다.

[표 38] 상담신청 신청인유형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상담건수	상담신청 신청인유형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기타	불명
2,343 (100)	1,368 (58.4)	178 (7.6)	260 (11.1)	26 (1.1)	4 (0.2)	72 (3.1)	2 (0.1)	433 (18.5)

* ()안의 숫자는 %

바. 상담내용 유형

상담내용별로 살펴보면 정정 및 반론보도가 1,477건(52.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손해배상 752건(26.5%), 추후보도 70건(2.5%), 형사고소 40건(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 중 특이한 점은 인터넷신문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어떤 기사가 문제되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까지 된 이후에도 언론사측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기사가 계속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언론중재법 규정만으로는 문제되는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정정보도의 취지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임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부가적으로 조정대상 기사의 삭제도 함께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39] 상담내용 유형

(2007. 1. 1. - 2007. 12. 31.)

구분 상담건수	상담내용 유형							계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금지청구	강제집행 절차	형사고소	기타	
2,343	1,477 (52.0)	70 (2.5)	752 (26.5)	76 (2.7)	12 (0.4)	40 (1.4)	413 (14.5)	2,840 (100)

* ()안의 숫자는 %

* 상담내용은 복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함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

상담에 대한 이용자 종합만족도 81.1점

”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상업적 서비스의 고품격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점차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2007년도에 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 고객 최우선 마인드 확립, 상담 및 접수업무의 능률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도모해왔다. 그 결과 매달 평균 200건에 가까운 상담사건이 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신청,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측면 외에 위원회 상담서비스는 그 질적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원회 상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종합만족도가 81.1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상담신청인들이 실제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 피해호소 내용 전부가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기관의 절차를 불가피하게나마 안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80점을 상회하는 만족도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닐 것이다.

물론, 조사결과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표에 의하면 상담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과 더불어 '상담원 친절' 항목이 중점 개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의 불만 섞인 호소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담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전망

상담업무는 상담신청인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 봉사정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치밀한 법률지식과 판단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상담업무에 능숙한 상담원이라도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위원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칭 '상담전문가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 직원들을 직급별로 나누어 상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최신 판례나 조정사례, 적절한 상담기법, 상담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인드 등을 교육하고자 한다.

상담교육팀 상근변호사들이 직원 교육을 담당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위원회가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08년도에는 보다 새롭고 충실한 내용을 담은 네 번째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사례집 발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사례에 대한 소개와는 별도로 FAQ란을 신설할 것이다. 위원회 조정절차에 대한 문의라든가, 조정신청 기간에 대한 문의,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 등 상담사례로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자주 질문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FAQ란을 만들 계획이다.

최신 판례의 경향 및 조정사례들도 충분히 반영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새롭게 발간할 상담사례집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종사하는 기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 교육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1. 개요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에 대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4년 4월 이후,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및 분쟁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는 언론사, 지방공무원, 대학교, 공·사기업을 상대로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바르게 알리는 취지의 교육을 실시했다. 평범한 일반인도 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파급 효과가 매우 막대하고 신속하다는 점을 들어 권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일반인이 보도의 피해자가 된 조정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의 사전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보도로 인해 침해할 수 있는 국민의 인격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취재과정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국민의 인격권과 알 권리를 보다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기사 작성에 대해 실제의 조정사례 및 판례를 들어 설명한다. 동영상,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2. 추진실적

“

2007년 한 해 동안 총 72회 교육 실시

”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2006년 대비 2회 더 많은 총 72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 35회, 지방자치단체 12회, 대학 10회, 공·사기업 9회, 기타 6회 등이다.

2005년 이후로 언론사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점점 고취되면서 언론분쟁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언론사 입장에서 분쟁이 일단 발생한 후에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언론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판단하에 분쟁의 사전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한 번 교육을 받은 언론사에서 재차 교육을 요청하는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용면에서 위원회는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2007년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와 언론사가 알아야 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대처 방안 및 방지책을 안내하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의 두 가지 교재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이들 교육 책자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 관련 법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 조정 사례 및 법원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여 언제라도 교재를 찾아보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익산중앙초등학교 교사 대상 교육현장 (2007.8.31.)

[표 40] 2007년도 교육실시 현황

연번	교육일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1	01. 11.	서울지역대학 영자신문연합	소속 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2	01. 15.	한국언론재단	신문통신 수습기자	언론분쟁 Role Play
3	01. 23.	한국언론재단	방송 수습기자	''
4	01. 29.	한국언론재단	신문통신 수습기자	''
5	02. 05.	한국언론재단	신문통신 수습기자	''
6	02. 22.	헤럴드미디어	신문 수습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7	02. 26.	(주)CJ	홍보담당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8	03. 05.	한국언론재단	신문통신 수습기자	언론분쟁 Role Play
9	03. 07.	한국언론재단	''	''

연번	교육일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10	03. 19.	한국언론재단	인터넷신문 수습기자	언론분쟁 Role Play
11	03. 20.	경찰청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2	03. 21.	한국언론재단	예비언론인	언론분쟁 Role Play
13	03. 30.	에델만 코리아	PR 전문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4	04. 04.	안성소방서	소방공무원	''
15	04. 06.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홍보담당자	''
16	04. 0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 취재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17	04. 12.	중앙소방학교	소방홍보담당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18	04. 13.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생	''
19	04. 17.	경희대학교	대학생	''
20	04. 18.	경희대학교	대학생	''
21	04. 25.	한국언론재단	인턴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22	04. 26.	한국언론재단	지역언론사 기자	''
23	05. 02.	경남지방공무원 교육원	지방공무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24	05. 09.	동국대학교	대학생	''
25	05. 15.	한국언론재단	경기일보 경력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26	05. 17.	주한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기업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27	05. 22.	한국언론재단	지역언론사 수습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28	05. 23.	평택소방서	소방공무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29	05. 30.	신한금융지주회사	홍보담당자	''
30	06. 05.	동국대학교	대학생	''
31	06. 08.	[주]프레인	임직원	''
32	06. 11.	한국언론재단	YTN/아리랑TV 수습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33	06. 19.	대한불교조계종	주지스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34	06. 26.	국립방재 교육연구원	지방공무원	''
35	06. 27.	한국언론재단	지역언론사 수습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36	06. 27.	대한불교조계종	주지스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37	06. 29.	영광신문	취재기자	''
38	07. 04.	대한불교조계종	주지스님	''

연번	교육일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39	07. 10.	오마이뉴스	인턴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40	07. 24.	한국언론재단	예비지역언론인	''
41	08. 24.	헤럴드경제	수습기자	''
42	08. 31.	익산 중앙초등학교	교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43	09. 03.	한국언론재단	국제/서울/울산 신문수습기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대처방안
44	09. 07.	UNESCO 한국지사	임직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45	10. 01.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직원	''
46	10. 05.	전남대 신방과	수강생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47	10. 05.	SBS	수습기자	''
48	10. 08.	호남대 신방과	수강생	''
49	10. 10.	인제대 신방과	수강생	''
50	10. 16.	한국언론재단	수습기자	''
51	10. 25.	충남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52	10. 29.	경남공무원교육원	공무원	''
53	10. 30.	풀뿌리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운동가	''
54	10. 31.	경기도인재개발원	공무원	''
55	11. 02.	인천신문	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56	11. 06.	서울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57	11. 07.	인제대 신방과	수강생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58	11. 13.	한국언론재단	수습기자	''
59	11. 15.	CJ TVN	PD 등 임직원	''
60	11. 16.	강원 동호초등학교	학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61	11. 16.	강원 남호초등학교	학생	''
62	11. 20.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
63	11. 22.	한국언론재단	케이블TV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64	11. 28.	한국언론재단	수습기자	''
65	11. 30.	CJ 미디어(Mnet)	임직원	''
66	12. 03.	경희대학교	수강생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67	12. 05.	한국언론재단	수습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68	12. 07.	환경관리공단	임직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
69	12. 07.	미디어 코리아뉴스	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70	12. 07.	새전북신문 연합회	기자	''

연번	교육일자	의뢰기관	교육대상	교육내용
71	12. 15.	전남언론인	기자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72	12. 28.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

교육 수강자 만족도 93.6점

”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및 분쟁예방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교육대상 즉, 언론인과 일반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2007년 설문조사 결과 언론인과 일반인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강자 전체 만족도는 93.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언론인의 만족도가 93.5점, 일반인의 만족도가 93.7점으로 비슷했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주제 및 내용’ 항목에 대하여 일반인의 97.6%, 언론인의 95.9%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건 사례를 통한 이해’에 대한 만족도도 일반인의 96.4%, 언론인의 100%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각자료 및 동영상을 통한 이해’ 항목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97.2%, 언론인의 98%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위원회의 교육이 적절한 사례와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항목에서 일반인은 90.8점, 언론인은 89.4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법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강의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보다 알기 쉽고 친근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인의 95.6%, 언론인의 98%가 위원회 교육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인의 84.5%, 언론인의 91.8%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위원회의 교육에 대해 일반인 및 언론인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망

“

다회성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내용 다양화 해야

”

위원회의 교육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교육 대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교육 수요를 창출하려는 위원회의 노력과 홍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는 일반적인 법 논리, 사례에 대한 교육보다는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단순히 피해구제 및 분쟁대처 두 가지로 양분된 교육이 아니라 한층 다양하고 세밀하며 밀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다회성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여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피교육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 3년간의 교육 실시 결과 언론사 대상의 교육에 비해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따라서, 2008년에는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수요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각 사회복지관 등에 출장 상담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위원회를 내방하는 일반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언론사 수습기자 교육현장

제5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제1절 | 개요

위원회는 2007년 7월, 기존의 조사연구팀 기능 가운데 조사와 연구기능을 분리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한 제도연구팀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로써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핵심 연구부서를 갖추게 되었으며, 명실상부한 언론법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였다.

제도연구팀의 주요 업무로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의 학술행사 개최와 각종 발간사업 및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등이 있다.

2007년에 위원회는 세미나 및 토론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계간 <언론중재>는 언론법제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언론조정·중재사례 및 판결 등 언론피해구제제도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언론학과 법학 전공자들의 연구 및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

아울러 언론피해구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자료를 구비한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여 학계, 법조계 등의 연구활동을 돕는 등 언론법제 분야의 지식저장고이자 메인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절 |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계간 <언론중재> 발간

<언론중재>는 언론법제에 관한 국내외 논문, 사례 등을 수록하고 언론 및 언론법제의 다양한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통권 105호를 발행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및 공공도서관, 시민단체 등과 법조계, 언론계, 학계의 전문가 등에게 배포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웹진 <언론중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여름호에서는 '2007 대통령 선거보도 주요 이슈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을호에서는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에 관한 논문을 각각 게재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보도와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언론중재>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수준 높은 논문과 시의성 있는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언론이나 법 전공자들이 논문이나 전문서적을 출간할 때 <언론중재>를 인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배포처 외에 각계에서 발송 요청이 이어지는 등 언론법제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표 41] 2007년도 계간 <언론중재> 주요내용

호수	특집	주요 논문	기타 주요 내용
봄호 (통권 102호)	'헤드라인 저널리즘' 과 언론윤리	미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법리 전개	2006년도 조정신청처리 등 주요 업무처리현황
여름호 (통권 제103호)	2007 대통령 선거보도 주요 이슈 점검	인종 차별 방송 심의로 본 호주 언론의 자율규제	피해자 보도와 인격권
가을호 (통권 제104호)	언론평해구제 효과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 시스템 개선방안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겨울호 (통권 제105호)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과제	프랑스의 언론법제: '언론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언론보도의 문제점, 해외시찰보고서

나. <연차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중재신청사건 및 시정권고 사례, 각종 통계 분석을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책과 CD로 발간하고 있다. CD 형태의 <연차보고서>는 발송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보관 및 소지가 용이하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활용도가 높다.

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례, 중재사례, 시정권고 사례, 각종 통계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2007년 3월, 책 300권과 CD 1,000매의 두 가지 형태로 발간하여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약 900여 곳에 배포하였다.

2. 세미나·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목적으로 세미나와 지방토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언론피해구제제도 미비점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혀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도에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총 4차례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가.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세미나

세미나는 언론분쟁의 한 당사자인 언론사 데스크와 중재위원 그리고 각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언론법제와 윤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언론과 피해구제제도 및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는 장으로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7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틀에



→ 2007년도 위원회 정기세미나

걸쳐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정기세미나에서는 김동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이승선 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한진만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위원회 각 중재부가 조정, 결정하는 손해배상액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대해 다소간의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고충처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언론계와 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 주제논문 및 토론내용은 정리되어 종합보고서로 발간되었다.

나. 언론중재제도 홍보를 위한 지방토론회

위원회는 언론사, 시민단체, 공공기관, 학계 등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제도 운용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매년 3회 지방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부산, 강원, 광주에서 각 1회씩 개최하였다.



➔ 강원지방토론회 (2007. 7. 10.)

[표 42] 2007년도 지방토론회 개최현황

구분	부산지방토론회	강원지방토론회	광주지방토론회
일시	4. 10.	7. 10.	10. 16.
장소	부산 코모도호텔	춘천 세종호텔	광주 프라도호텔
발표자	김민남 위원	한진만 위원	김성 위원
주제	언론조정 신청에서 보인 '피해' 주장과 취재관행의 문제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 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참석인원	약 100명	약 100명	약 90명

3. 학술자료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료실 운용

전자도서관을 구축한 지 2년째인 2007년도에 위원회는 다양한 학술자료의 확보에 힘쓰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직원과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국내도서 466권, 해외도서 87권의 신규 도서를 마련했다. 이로써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은 총 3,300여 권에 이르며, 이 중 80% 정도가 언론학 및 법학도서이다.

직원들과 중재위원은 물론 학생 및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자료실을 방문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제별로 비치하고 독서대를 설치하는 등 자료실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간 <언론중재>에 수록된 언론법제 관련 논문, 국내외 판결례 등 다양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위원회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제3절 | 평가

위원회는 2007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법 및 선거보도 관련 쟁점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계간 <언론중재>는 언론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록하여 언론중재법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인 운용 및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쌓았다.

2007년도 세미나는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언론사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제도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회의 경우 급속히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비춰볼 때 지금처럼 지역별로 3~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최 주기를 줄여야 하며, 보다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의 형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